

石油事業法對查表

(석유사업법 · 시행령)

- 동력자원부 -

石油事業法

개정	1970.	1.	1	법률	제 2183호
	1975.	7.	25	"	제 2780호
	1977.	12.	31	"	제 3071호
	1982.	12.	31	"	제 3645호
	1986.	5.	12	"	제 3839호

第1條(目的) 이 법은 石油事業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石油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期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 12. 31 法 3645]

1. “石油”라 함은 原油·天然가스(액화한것을 포함한다) 및 石油製品을 말한다.

石油事業法시행령

제정	1971.	11.	22	대통령령	제 5848호
개정	1975.	12.	26	"	제 7899호
	1977.	10.	5	"	제 8715호
	1982.	8.	7	"	제 10880호
	1983.	2.	21	"	제 11054호
	1983.	6.	15	"	제 11150호
	1983.	8.	19	"	제 11209호
	1983.	10.	8	"	제 11247호
	1984.	4.	9	"	제 11403호
	1985.	3.	12	"	제 11659호
	1986.	5.	19	"	제 11903호
	1986.	9.	22	"	제 119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5. 3. 12 대령 11659]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石油製品”이라 함은 휘발유·등유·輕油·重油·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炭化水素油 및 石油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石油精製業”이라 함은 石油를 정제하여 石油製品(石油製品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품공정에서 생기는 副産物인 石油製品(이하 “부산물인 石油製品”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石油販賣業”이라 함은 石油의 판매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石油輸出入業”이라 함은 石油의 수출입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石油精製業者”라 함은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石油精製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7. “石油販賣業者”라 함은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石油販賣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8. “石油輸出入業者”라 함은 第11條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石油수출입업을 하는 者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 이하의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등유·경유 또는 휘발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용제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 3 조 (탄화수소유등)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石油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항 공 유
2. 용 제
3. 아스팔트
4. 나 프 타
5. 프 로 판
6. 부 탄
7. 石油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 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 기유(조유를 포함한다)

第3條(石油需給計劃)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當該年度 이후 5년간의 石油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石油수급계획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石油의 수요량 및 공급량
- 2. 石油의 생산량 및 수입량
- 3. 石油精製施設의 처리능력
-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石油의 수급에 관한 중요사항

③ 石油수급계획은 石油과 石油 이외의 연료 및 動力源의 수급사정, 石油精製業者의 생산계획, 石油資源의 개발상황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動力資源部長官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石油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第4條(石油精製業의 허가) 石油精製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石油製品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石油정제업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石油精製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政 82. 12. 31 法 3645]

第5條(缺格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石油精製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 2. 파산선고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 이 法에 위반하여 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刑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者
- 4. 第13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정제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法人의 대표자가 第1號 내지 第4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법인

[全文改正 86. 5. 12 法 3839]

제 4 조(石油수급계획)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石油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 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 5 조(신고대상인 石油정제업) 법 제 4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배럴 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개정 85. 3. 12 대령 11659]

第 6 條 (石油精製業의 허가요건)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石油精製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國內의 石油精製施設의 처리능력이 石油需給計劃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
2. 石油精製業을 행할 수 있는 경제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外國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
4. 石油精製사업계획의 내용이 石油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에 적절할 것.

② 第 1 項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82. 12. 31 法 3645]

第 7 條 (石油精製施設등의 허가) ① 石油精製業者 (第 4 條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者를 제외한다)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비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82. 12. 31 法 3645]

② 第 6 條의 규정은 第 1 項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 8 條 삭 제 [86. 5. 12 法 3839]

第 9 條 (石油정제업의 承繼와 신고) ① 石油정제업자가 그 石油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石油精製業者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石油精製業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民事訴訟法에 의한 강제경매·경매법에 의한 경매·파산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石油精製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石油精製業者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石油精製業者에 대한 石油精製業

제 6 조 (石油정제업의 허가요건) ① 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 능력이 국내석유수요량의 13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의 석유정제사업 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 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 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原油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중요한 시설의 개조) 법 제 7 조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분해시설

의 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精 製業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月 이내에 動力 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動力資源部長官 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第5條의 규정은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全文改正 86. 5. 12 法 3839]

第10條 (石油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石油정제업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매년도의 石油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1條 (石油輸出入業의 신고) ① 貿易去來法에 의

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石油수출입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石油수출입업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매년도의 石油수출입계획을 動力資源 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2. 12. 31 法 3645]

第12條 (石油販賣業의 허가) ① 石油販賣業을 하고

자 하는 자와 부산물인 石油製品을 판매하고자 하 는 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 力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 領令이 정하는 石油의 판매업 및 일정규모 이하 의 石油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動力資源部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改正 82. 12. 31 法 3645]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石 油販賣業의 종류와 그 取扱石油製品 및 허가기준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 5. 12 法 3839]

제 8 조 (石油정제업 등의 변경신고) 법 제 4 조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정제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중 동력자원부 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石油판매업의 허가기준등) ① 법 제1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허가관청은 석유의 수급 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1 의 허가기준 외에 그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추 가로 더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은 다 음과 같다. [개정 85. 3. 12 대령 11659]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第22條 第2項의 위반이 이를 이유로 第13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販賣業의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장소에 허가가 취소된 石油販賣業과 같은 종류의 石油販賣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6. 5. 12 法 38 39]

④ 第5條의 규정은 石油販賣業의 허가에 第9條의 규정은 石油販賣業의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第5條 第4號중 “第13條 第1項”은 “第13條 第3項”으로, “石油精製業”은 “石油販賣業”으로 보고, 第9條중 “石油精製業”은 “石油販賣業”으로, “石油精製業者”는 “石油販賣業者”으로, “石油精製施設”은 “石油販賣施設”로 본다. [改正 86. 5. 12 法 3839]

第13條 (허가의 취소 등)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精製業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石油精製業의 허가 또는 第7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石油精製業者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인 石油精製業者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5條 第1號 내지 第3號의 1 또는 同條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2. 第7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

1. 아스팔트 및 운활유의 판매업

2. 일반판매소

③ 액화石油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85. 3. 12 대령 11659]

④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5. 3. 12 대령 11659]

⑤ 법 제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법 제22조 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판매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86. 9. 22. 대령 11965]

니하고 石油精製施設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
한 때

- 3. 石油精製業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
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4. 不正한 방법으로 石油정제업의 허가 또는 第
7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5.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石油를 판매한 때
- 6. 第17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7. 第18條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 8. 第18條의 2 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同
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때
- 9. 第20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10. 第22條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石油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82.12.31 法 3645, 86. 5. 12 法 3839]

- 1. 石油輸出入業의 신고를 허위로 한 때
- 2. 石油輸出入業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
이 1年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事業을 휴지한 때
- 3. 第1項 第5號 내지 第10號의 1에 해당한 때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판매업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石油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石油 판매업자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
(法人인 石油販賣業者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2.12.31
法 3645, 86. 5. 12 法 3839]

- 1. 第12條 第4項에서 준용하는 第5條 第1號
내지 第3號의 1 또는 同條 第5號에 해당한
때

2. 第12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石油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石油販賣業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石油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때
 5. 取扱石油製品이 아닌 石油製品을 판매하거나 다른 石油판매업자에게 그 취급石油製品이 아닌 石油製品을 공급한 때
 6. 第1項 第5號 내지 第10號의 1에 해당하는 때
- 第13條의 2 (課徵金처분)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정제업자가 第13條 第1項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石油수출입업자가 第13條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3條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動力資源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徵收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第17條의 2의 규정에 의한 石油事業基金의 재원으로 한다. [本條 신설 82. 12. 31 法 3645]

第14條 (사업의 休·廢止신고) 石油정제업자·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15條 (石油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石油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石油정제업자, 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의 石油판매가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86. 9 대령]

②~⑤ 삭제 [86. 9 대령]

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第16條(原油·天然가스의 구입계약 등의 승인) 原油 또는 天然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와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82. 12. 31 法 3645)

第17條(石油수급 등의 조정)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국내의 石油사정의 변동으로 石油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石油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石油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石油정제업자·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에게 다음 各號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改正 82. 12. 31 法 3645, 86. 5. 12 法 3839)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石油배정에 관한 조정
2. 石油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3. 石油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에 관한 조정
4. 石油의 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
5. 石油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에 관한 조정
6. 石油의 위탁가공에 관한 조정
7. 石油製品の 규격 및 定量거래에 관한 조정
8. 石油정제업자·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 상호간의 石油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에 관한 조정
9. 石油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에 관한 조정
10. 石油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發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82. 12. 31 法

제11조의 2 (신고대상인 原油의 구입계약 및 수송계약)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원유의 구입계약 및 수송계약은 다음과 같다.

1.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및 물량 이하의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구입계약
2.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임 이하의 항차별 원유수송계약(본조신설 84. 4. 9 대통령 11403)

3645)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精油産業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石油정제업자에 대하여 正유시설의 능력에 관한 필요한 권고 또는 調整을 할 수 있다. [신설 86. 5. 12 法 3839]

第17條의 2 (基金의 設置) 石油의 供給 및 價格안정과 石油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石油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本條신설 77. 12. 31 法 3071]

제12조 (基金의 관리·운용) ①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및 ③ 삭제 [86. 5. 19 대령 11903]

제12조의 2 (基金관리·운용지침의 수립 등) 동력 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지침(이하 “기금관리·운용지침”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86. 5. 19 대령 11903]

제12조의 3 (石油事業基金 운용심의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 석 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基金관리·운용지침
2. 基金운용계획
3. 기금의 결산보고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동력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1.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및 동력자원부소 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1 급의 일반직무국가공무원(1급상 당별정직국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③ 심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동력자원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 서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

第17條의 3 (基金의 조성)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制限으로 조성한다. [改正 82. 12. 31 法 3645, 86. 5. 12 法 3839]

1. 石油수입 또는 石油제품판매시에 石油수입업자 또는 石油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국제原源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國內石油정제업자가 취득한 差等 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3. 韓國石油開發公社法 第11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依한 납입금
 4. 第17條의 6의 規定에 依한 借入金
 5. 基金의 運用으로 生기는 수입금
- ② 第1項 第1號 及 第2號의 規定에 依한 수입금의 徵收대상자·徵收비율 及 徵收방법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82. 12. 31 法 3645]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定한다. [본조신설 86. 5. 19 대령 11903]

제12조의 4 (基金운영계획의 승인)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2의 規定에 依한 基金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연도별 基金운영 지침을 다음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수립하여 공사에 通報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基金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86. 5. 19. 대령 11903]

제13조 (收入金の 徵收대상자) ① 법 17조의 3 제 1항 제 1호의 規定에 依한 수입금의 徵收 대상자는 石油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83. 10. 8 大령 11247, 84. 4. 9 大령 11403, 86. 5. 19 大령 11903]

1. 공사(비축용 石油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의 비축용 石油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
3. 제 1호 及 제 2호 외에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비축이 必要하다는 인정을 받아 비축용 석유를 수입하는 者
4. 潤滑유·潤滑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나프타·석유화학공업원료용경유(가스오일) 及 천연가스액상(라이트NGL)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5. 항공기 또는 선박의 燃料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者
6. 기타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특수 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徵收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者

②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規定에 불구하고 비축된 石油를 판매·사용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수입금을 徵收한다. 다만, 그 石油가 석유정제업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수입금을 徵收한다. [개정 84. 4. 9 大령 11403, 86. 9. 大령]

제14조 (收入金の 징수비용 등) ① 법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리터당 美합중국 통화 12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 및 부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美합중국통화 3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石油의 종류·질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이를 차등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86. 5. 19 대령 11903]

제15조 (收入金の 징수방법) ① 석유수입업자는 통관일까지 수입금을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石油에 대하여는 당해 석유를 판매·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비축시 시설에서 출하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4. 4. 9 대령 11403, 86. 9. 대령]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石油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입금을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중 일부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의 납부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86. 9. 대령]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石油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原油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될 때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를 수입한 자가 그 석유를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84. 4. 9. 대령 11403]

제14조 (收入金の 징수비용 등) ① 법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리터당 美합중국 통화 12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 및 부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美합중국통화 3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石油의 종류·질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이를 차등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86. 5. 19 대령 11903]

제15조 (收入金の 징수방법) ① 석유수입업자는 통관일까지 수입금을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石油에 대하여는 당해 석유를 판매·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비축시 시설에서 출하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4. 4. 9 대령 11403, 86. 9. 대령]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石油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입금을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중 일부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의 납부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86. 9. 대령]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石油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原油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될 때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에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一般資金貸出 延滯利率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86. 12. 31 法 3645]
[本條신설 77. 12. 31 法 3071]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86. 9. 대령]

④ 石油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그 石油의 통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石油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의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石油에 대한 수입금을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4. 4. 9 대령 11403, 86. 9 대령]

⑤ 동력자원부장관은 石油정제업자 또는 石油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출(주한 국제연합군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와 제13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유탄유 및 석유화학공업원료용 경우를 제외한다)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생산에 원료로 소요되는 石油의 수입시에 징수한 수입금을 이를 환급한다. [개정 84. 4. 9 대령 11403, 86. 9. 대령]

⑥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를 수입한 자가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날까지 그 石油의 생산제품을 50% 이상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석유(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 되었거나 공급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나프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17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84. 4. 9 대령 11403, 86. 9 대령]

⑦ 제 1 항 단서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환급의 대상과 방법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84. 4. 9 대령 11403, 개정 86. 9 대령]

第17條의 4 (基金의 용도) 基金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82. 12. 31 法 3645, 86. 5. 12 法 3839)

1. 石油의 비축·저장 및 수송시설

2. 石油개발사업

3. 原油의 差等가격과 石油製品가격의 平均화로 인하여 石油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4. 石油製品의 품질관리사업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 자원개발사업
(本條신설 77. 12. 31 法 3071)

⑧ 석유수입업자가 石油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4. 4. 9 대령 11403, 개정 86. 9 대령)

제16조 (基金의 용도) ① 법 제17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86. 5. 19 대령 11903)

1. 石油의 비축·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石油의 구입(수수료·이자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 또는 수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자

4. 공사의 石油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② 법 제17조의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1. 石油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개정 86. 9 대령)

2. 石油자원의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3. 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개정 86. 9 대령)

③ 법 제17조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86. 5. 19대령11903)

1. 原油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原油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 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原油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5. 石油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과 석탄사업·진원개발사업·가스사업·에너지

第17條의 5 (基金의 관리) ① 基金은 動力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基金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金管理者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명령할 수 있다.

③ 基金管理者의 지정 및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신설 77. 12. 31 法 3071〕

第17條의 6 (基金의 차입) 基金管理者는 基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정유 시설현대화사업의 육성·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6.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및 代替에너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④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제3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86. 5. 19 대령 11903〕

⑤ 동력자원부장관은 제3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6. 5. 19 대령 11903〕

제16조의 2 (基金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6. 5. 19 대령 11903〕

제17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기금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 공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전문개정 86. 5. 19 대령 11903〕

제18조 (基金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결 후 2월 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本條신설 77. 12. 31 法 3071)

第18條 (石油배급 등의 조치) ① 動力資源部 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또는 국제석유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소요石油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第17條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함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石油의 배급에 관한 사항
2. 石油의 讓渡·讓受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3. 石油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石油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82. 12. 31 法 3645)

第18條의 2 (石油製品的의 품질유지·검사) ① 石油 정제업자·石油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石油製品的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石油製品的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石油製品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石油製品的의 품질의 기준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신설 82. 12. 31 法 3645)

第19條 (帳簿의 비치) 石油정제업자, 石油 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20條 (보고 및 검사)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이 법

제19조 (石油의 배급) 動力자원부장관이 법18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石油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石油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에 관한 사항
3. 石油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石油의 양도·양수의 제한등) 動力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石油사용의 제한등) 動力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石油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 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品質검사수수료) 법 제18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動力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動力資源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石油정제업자·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石油정제업자·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의 사업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8條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動力資源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石油소비자에게 그 石油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石油소비자의 사무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주요 石油소비자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21條 (石油소비실적 등의 신고) 動力資源部長官은 石油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動力資源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石油소비자에게 石油소비실적 또는 石油소비계획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第22條 (行爲의 금지) ① 石油정제업자·石油수출입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2.12.31 法 3645]

1. 定量에 미달하여 石油을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기업의 배제나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계약 또는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고의로 石油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石油의 출고제한을 하는 행위
4.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石油을 판매하는 행위
5. 暴利를 목적으로 石油을 買占하거나 매석하는 행위

제23조 (주요 石油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일반대리점경영자 또는 용제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石油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 [개정 85. 3. 12 대통령 11659]

② 누구든지 石油製品에 石油化學製品을 혼합하거나 石油化學製品에 다른 石油化學製品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類似石油製品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類似石油 製品임을 알고 이를 보관·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82. 12. 31 法 3645, 86. 5. 12 法 3839]

第22條의 2 (聽聞)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3條의 2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第13條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신설 86. 5. 12 法 3839]

第23條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動力資源部長官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動力資源部長官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韓國石油開發公社法에 의한 韓國石油開發公社 또는 石油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動力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全文改正 82. 12. 31 法 3645]

제24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의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 2 (청문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6. 9 대령]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 4 호의 업무에 관하여 인력·설비·전문적기술 기타의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86. 9 대령]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권한

- 2.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 4.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 5.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권한
-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石油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이 경우 당해 도지사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을 허가함에 있어 판매구역에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86. 9. 대령]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검사소에 위탁한다. [개정 86. 9. 대령]

④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유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⑤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이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항신설 86. 9. 대령]

제26조(보고) 도지사 또는 검사소의 장은 그 위임

第24條 (벌칙)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4條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石油정제업을 한 자
2. 第18條의 2 第1項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第22條 第2項의 규정에 위반한 자

[全文改正 82. 12. 31 法 3645]

第25條 (벌칙)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千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18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第22條 第1項 第2號 내지 第5號의 위반행위를 한 자. [全文改正 82. 12. 31 法 3645]

第26條 (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4條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石油정제업을 한 자
2. 第7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石油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3. 第12條 第1項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石油판매업을 한 자
4. 第12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石油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취급 石油製品이 아닌 石油製品을 판매하거나 다른 石油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石油製品을 공급한 자
5. 第17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第18條의 2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第22條 第1項 第1號의 위반행위를 한 자

[全文改正 82. 12. 31 法 3645]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6. 9. 대통령령]

第27條(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86. 5. 12 法 3839]
2. 第1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石油수출입업을 한 자
3. 第12條 第1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石油판매업을 한 자
4. 第13條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第16條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原油 또는 天然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자
6. 第2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全文改正 82. 12. 31 法 3645]

第28條(過怠料) ①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第19條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
2. 第2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86. 5. 12 法 3839]

1. 第9條 第3項(第12條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第10條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第11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第14條 또는 第16條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③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부과 징수한다. [신설 86. 5. 12 法 3839]

④ 第3項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6. 9. 대령]

[新設 86. 5. 12 法 3839]

⑤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新設 86. 5. 12 法 3839]

⑥ 第4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新設 86. 5. 12 法 3839> [全文改正 82. 12. 31 法 3645]

第29條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24條 내지 第27條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벌금형을科한다. [改正 82. 12. 31 法 3645]

第3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動力資源部長官이 第23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本條 신설 82. 12. 31 法 3645]

第31條 (벌칙적용의 特例) ① 第25條, 第26條 第2號·第5號 및 第6號와 第27條 第6號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 第13條의 2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는 動力資源部長官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法人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이 第29條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6. 5. 12 法 3839]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3條의 2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 없다. [本條 신설 82. 12. 31 法 3645]

第32條 (시행령) 이 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 1 條(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 2 條(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申告를 한 石油판매업자 또는 石油수입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石油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石油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石油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石油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정제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정제업 또는 판매업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된 때에는 그 정제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石油정제업 또는 石油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第2項 단서의 규정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販賣業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⑥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한다.

附 則(77. 12. 31 法 307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82. 12. 31 法 3645)

①(施行日) 이 법은 1983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石油精製業·石油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판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기금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83. 8. 19 대령 1120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83. 10. 8 대령 1124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4. 9 대령 114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12 대령 1165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용제생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용제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용제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아 용제를 판매하거나 용제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판매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별표 1〕 제 2호 또는 제 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용제대리점 또는 용제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석유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일반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石油정제업 또는 石油판매업이 第4條 단서 및 第12條 第1項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될 경우에 그 石油정제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는 이 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罰則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附 則(86. 5. 12 法 3839)

第1條 (시행일) 이 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 (石油販賣業의 허가제한에 관한 적용례) 第12條 第3項의 개정규정은 이 法 시행 후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3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石油精製業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法 시행 당시 第5條 第1號 및 第2號(第12條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改正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는 이 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法人인 石油정제업자 또는 石油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86. 5. 19 대령 1190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기금수입금의 징수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한 고시는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86. 9. 대령)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입금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석유사업기금 수입금의 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제15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동력자원부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대리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제 9 조 제 1 항 관련)

(개정 85. 3. 12 대령 11659, 86. 9. 대령)

1. 一般代理店의 허가기준

구 분 \ 지 역	서울특별시 · 仁川직할시 및 京 畿 道	기 타 지 역
가. 시 설 기 준		
1) 저 장 시 설	1,500Kℓ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700Kℓ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2) 수 송 장 비	100Kℓ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일 것	50Kℓ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자 본 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 취 급 유 종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자기소유인 것이어야 한다.

2. 溶劑대리점의 허가기준

가. 시 설 기 준	
1) 저 장 시 설	150Kℓ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2) 수 송 장 비	20Kℓ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자 본 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 취 급 유 종	용 제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자기소유인 것이어야 한다.

3. 주유소의 허가기준

구 분 \ 지 역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시 설 기 준		
1) 저 장 시 설 (지하저장시설일 것)	40Kℓ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20Kℓ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2) 주 유 기	4대 이상일 것.	2대 이상일 것
3)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 시설	1 개소	1 개소
나. 취 급 유 종	휘발유 · 등유 · 경유	

비고: 화장실 시설의 위치 ·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溶劑판매소의 허가기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 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석유사업 법)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허가대상인 석유정제업	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1. 石油정제 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조	법 제7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한 때		1,000만원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한 때		800만원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석유정제 시설을 개조한 때		500만원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석유정제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개조허가를 받은 때		1,000만원		
2. 石油수출입업의 신고 석유수출입업의 신고 를 허위로 한 때	법 제11조			700만원
3. 사업의 개시 및 휴지	법 제13조			
가. 石油정제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때		800만원		
나. 石油정제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800만원	500만원	
다. 石油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한 때				500만원
라. 石油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 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500만원
4. 石油판매가격	법 제15조			
石油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1,000만원	700만원	700만원
5. 조정명령	법 제17조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에 위반한 때		1,0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 石油의 배급조치	법 제18조			
석유의 배급 등의 조치에 위반한 때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 감사의 거부방해	법 제20조			
장부·서류 및 기타 필요한 물건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